

2021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공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등록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소방청장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시험과목) 및 [별표 6] ('20. 6. 30. 개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및 별표6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등의 필기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은 별표 6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6]의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 제출한 시험성적이 영어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을 지나 제출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추진배경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 시험의 경우,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성적 인정기간보다 짧은 시험이 있습니다.
- 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보유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 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3. 등록대상

- 다음의 영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한 자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 위에 언급하지 않은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 사전등록 불필요

4. 등록일정

연번	등록기간	성적제출대상	확인 소요기간	결과 확인 방법
1	'20. 12. 11. ~ '21. 01. 10.	'19. 02.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01월 말까지	확인 소요기간 내 개별 문자 안내
2	'21. 01. 11. ~ '21. 02. 10.	'19. 03.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02월 말까지	
3	'21. 02. 11. ~ '21. 03. 10.	'19. 04.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03월 말까지	
4	'21. 03. 11. ~ '21. 04. 10.	'19. 05.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04월 말까지	
5	'21. 04. 11. ~ '21. 05. 10.	'19. 06.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05월 말까지	
6	'21. 05. 11. ~ '21. 06. 10.	'19. 07.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06월 말까지	
7	'21. 06. 11. ~ '21. 07. 10.	'19. 08.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07월 말까지	
8	'21. 07. 11. ~ '21. 08. 10.	'19. 09.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08월 말까지	
9	'21. 08. 11. ~ '21. 09. 10.	'19. 10.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09월 말까지	
10	'21. 09. 11. ~ '21. 10. 10.	'19. 11.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10월 말까지	
11	'21. 10. 11. ~ '21. 11. 10.	'19. 12.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11월 말까지	
12	'21. 11. 11. ~ '21. 12. 10.	'20. 01. 01. 이후 실시된 시험	'21. 12월 말까지	

※ '21년 제27기 소방관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사전등록 불필요(자동 등록)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및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www.local.gosi.go.kr)에 사전등록한 경우 소방청에 사전등록 불필요

※ '22년 등록일정은 2021년 12월 중 공지 예정

5. 등록방법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에 등기우편으로 아래 자료 송부

- ① 영어성적 등록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 영어성적서

**보내실 주소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506호(나성동, 한림프라자)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영어성적 사전등록 담당자 앞**

6. 결과확인

○ 개별 문자 안내

7. 유의사항

- 본 안내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 적용 7일 전까지 소방청(<http://www.nfa.go.kr>) 및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중 해당 능력검정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성적을 사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타 기관에 사전등록한 자료도 인정됩니다.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자는 [붙임 4]의 ‘인적사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506호(나성동, 한림프라자)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영어성적 사전등록 담당자 앞**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영문성명, 응시일자, 점수, 수험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파일을 제출하여 시험 시행기관으로부터 진위여부 회신을 받을 수 없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확인 불가능 자료의 제공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붙임 1.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1부.
2. 영어성적 사전등록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4. 인적사항 정정신청서 1부.

<붙임 1>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단서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28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붙임 4>

인적사항 정정신청서

1. 접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기타 연락처 :	

2. 정정신청 내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정정사유

[내용 기입]

4.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록(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